|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세가지 기업소득세 사항 심사폐지 후 후속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6호  《국무원 행정심사항목 등 사항의 폐지와 조정에 관한 결정》（국발〔2014〕27호、국발〔2014〕50호）규정에 근거하여，“소이윤기업소득세 우대 향유의 승인”, “수입전액이 중앙에 귀속되는 기업의 관할 2급 및 2급 이하의 분지기구명단의 비안 감사”와 “종합납세 기업조직구조변경의 감사”등 항목의 심사를 폐지하며，현재 관련 기업 소득세 후속관리문제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소이윤기업 향유 소득세 우대정책 비안 수속의 간소화  장부에 근거한 징수를 실행하는 소이윤기업은, 2014년 및 그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를 합산납부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납세 신고서（A류，2014년판）의 공고〉에 관한 발표》（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3호）의 《기초 정보표》（A000000표）중 “104종업원수”, “105자산총액（만 위안）”의 빈칸을 기입하는 것을 통하여 비안수속을 이행하고，별도 비안은 하지 않는다.  2. “수입전액이 중앙에 귀속되는 기업의 관할 2급 및 2급 이하의 분지기구명단의 비안 감사”의 후속관리 폐지  수입전액이 중앙에 귀속되는(본 조에서 중앙기업이라 함)기업의 관할 2급 및 2급 이하의 분지기구명단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각각 그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다.  (1) 중앙기업의 관할 2급 분지기구 명단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기업 총괄기구가 조정후의 상황과 분지기구의 변경사항을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한다.  (2) 중앙기업이 2급 이하의 분지기구를 새로 추가한 경우 2급 분지기구는 영업집조와 총괄기구가 발급한 2급 또는 2급 이하의 분지기구의 증명문건을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서를 제출할 때 관할 주관 세무기관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새로 추가된 3급 및 그 이하의 분지기구는 영업집조와 총괄기구가 발급한한 3급 또는 3급 이하의 분지기구의 증명문건을 관할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3) 중앙기업이 취2급 및 그 이하 분지기구를 철회(말소)하는 경우 철회(말소)되는 분지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진행한다. 2급 분지기구는 취소(말소)되는 2급 및 이하 분지기구 사항을 관할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중앙기업 2급 및 이하 분지기구 변경 비안 사항에 근거하여 즉시 세수관리정보를 조정 및 보완해야 한다.  3. “종합납세 기업조직구조 변경감사”의 후속관리 폐지  종합납세기업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총괄기구와 관련 2급 분지기구는 조직구조 개편 후 30일 이내, 조직구조 변경 사항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총괄기구 소재 성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타 지역 경영 총괄납세 기업 소득세 징수관리 방법〉발행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제29조 규정에 따라 종합납세 기업 조직구조 변경 사항을 기업 소득세 총괄 납세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제24조 제3관 “종합납세기업이 이후 연도에 조직구조를 개편한 경우, 그 분지기구는 본 방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다시 심사 검증을 진행한다”규정은 폐지한다.  4. 제1조를 제외하고, 본 공고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2월 2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3项企业所得税事项取消审批后加强后续管理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6号  根据《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4〕27号、国发〔2014〕50号）规定，取消“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的核准”、“收入全额归属中央的企业下属二级及二级以下分支机构名单的备案审核”和“汇总纳税企业组织结构变更审核”等项目审批，现就有关企业所得税后续管理问题公告如下：  　　一、进一步简化小型微利企业享受所得税优惠政策备案手续  　　实行查账征收的小型微利企业，在办理2014年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通过填报《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A类，2014年版）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3号）之《基础信息表》（A000000表）中的“104从业人数”、“105资产总额（万元）”栏次，履行备案手续，不再另行备案。  　　二、取消“收入全额归属中央的企业下属二级及二级以下分支机构名单的备案审核”的后续管理  　　收入全额归属中央的企业（本条简称中央企业）所属二级及二级以下分支机构名单发生变化的，按照以下规定分别向其主管税务机关报送相关资料：  　　（一）中央企业所属二级分支机构名单发生变化的，中央企业总机构应将调整后情况及分支机构变化情况报送主管税务机关。  　　（二）中央企业新增二级及以下分支机构的，二级分支机构应将营业执照和总机构出具的其为二级或二级以下分支机构证明文件，在报送企业所得税预缴申报表时，附送其主管税务机关。  　　新增的三级及以下分支机构，应将营业执照和总机构出具的其为三级或三级以下分支机构证明文件，报送其主管税务机关。  　　（三）中央企业撤销（注销）二级及以下分支机构的，被撤销分支机构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规定办理注销手续。二级分支机构应将撤销（注销）二级及以下分支机构情况报送其主管税务机关。  　　主管税务机关应根据中央企业二级及以下分支机构变更备案情况，及时调整完善税收管理信息。  　　三、取消“汇总纳税企业组织结构变更审核”的后续管理  　　汇总纳税企业改变组织结构的，总机构和相关二级分支机构应于组织结构改变后30日内，将组织结构变更情况报告主管税务机关。总机构所在省税务局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57号）第二十九条规定，将汇总纳税企业组织结构变更情况上传至企业所得税汇总纳税信息管理系统。  　　废止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57号第二十四条第三款“汇总纳税企业以后年度改变组织结构的，该分支机构应按本办法第二十三条规定报送相关证据，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重新进行审核鉴定”的规定。  　　四、除第一条外，本公告自2015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2月2日 |